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5. 8. 26.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83호로 2025년 8월 14일 전승관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 ·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다. 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안 제3조 ~ 제4조)

라. 보험의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등(안 제5조 ~ 제6조)

마. 보험금 지급 제외(안 제7조)

아. 교육·홍보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 8. 14.~2025. 8. 2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 배경 및 취지

-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구분되며, 인지적·행동적 특성으로 인해 돌발적이거나 공격적인 ‘도전적 행동’¹⁾을 보일 수 있고, 이에 따라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사고로 인해 일부 발달장애인 가정은 피해자 치료비 등 손해배상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며, 그 결과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1)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인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강도, 빈도 혹은 기간을 보이는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일반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제한이나 접근을 거부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
(출처: 경기복지재단-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응 및 지원방안 연구)

- 한편, 2024년 9월 성동구를 시작으로 전국 8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 중 서울시 자치구는 5개 구가 해당됨.

연번	자치단체	제명	제정일자
1	광진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5. 7. 28.
2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5. 1. 3.
3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5. 4. 3.
4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4. 9. 25.
5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5. 7. 10.
6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5. 3. 10.
7	충청북도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5. 2. 11.
8	경기도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5. 3. 19.

- 또한, 성동구는 2025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하였으며, 그 보장 범위와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성동구청 담당자에 따르면 성동구의 발달장애인 등록 인원은 1,000명 이하이며, 보험료는 1인당 약 5만원대로 책정하였음 (1인당 보험료는 나이 및 직업군에 따라 금액차가 있음)
 - 또한, 배상책임보험임에 따라 실비로 지원하는 구민안전보험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함.
 - 참고로, 7월 기준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1,202명으로 파악됨.

타 서울시 자치구 보장내용(성동구)

● 가입보험료: 무료(성동구 지원)

⚠ 개인보험 및 타 제도의 의한 보상(구민안전보험) 관계없이 중복 및 비례보상 가능

● 보장범위 및 내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비고
상해후유장해	1억원	없음	상해보험 - 타 제도에 의한 보험 및 개인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24시간상해(입원일당)	2만원		
일상생활 중 폭력상해(1회한)	10만원		
특정전염병	20만원		
골절수술비	2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30만원		
화상수술비	30만원		
화상진단비	20만원		
식중독(2일이상)	20만원	2만원	배상책임 타 배상책임보험과 비례보상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	1천만원		

※ 단, 70세 이상의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불가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발달장애인’, ‘보호자’, ‘보험’ 등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함.
- 안 제3조(보험가입 등)는 피보험자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으로 명시함.
- 안 제4조(보험료 납부)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납부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하고, 보험기간·보장금액·자기부담금 등 세부 사항은 계약 시 정하도록 함.

- 안 제6조(보험금 청구 등)는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는 타 지자체 전출, 부정한 청구, 기타 법령·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에 대비하여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아울러 보험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절차 및 지급제외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자료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

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